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56호)
- 김의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57호)
- 김의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58호)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7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4
1.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14.

다. 회 부 일 : 2026. 9. 14.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14.

다. 회 부 일 : 2026. 9. 14.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14.

다. 회 부 일 : 2026. 9. 14.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
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14.

다. 회 부 일 : 2026. 9.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 4개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입법 배경

13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제9조 등).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외에 다른 수사기관 유치장에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방법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경찰서유치장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도 유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2조 및 제311조).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의 감치를 위한 구속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를 경찰서유치장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검토의견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공소청법」,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안 제9조제2항에서 파견검사에게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부분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선거특검법”) 부칙 제5조1)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1) 지방선거특검법 부칙

제5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③·④ (생략)

제14조제2호²⁾와의 관계에서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조문대비표>

현행 지방선거특검법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②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2)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생략)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생략)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 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를 할 수 있다.	----- ----- ----- ----- -----있고, <u>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 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략)	⑤ (생략)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감치를 위한 구속집행자 및 유치장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및 해당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존의 감치 장소에서 “구치소”가 삭제되는 문제가 있는바, “구치소”를 현행대로 감치 장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조문대비표>

현행 민사소송법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u>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u> 으로써 집행한다.	④----- ----- ----- ----- ----- <u>중대범죄 수사청 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u> ----- -----.	④----- ----- ----- ----- ----- <u>중대범죄 수사청 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u> -----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중수청법 등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라. 종합의견

4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공소청법」, 중수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라,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치를 위한 유치장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유치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지방선거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파견검사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구치소”를 현행대로 감치 장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